

# 마을돌봄 사업의 변화와 성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

## 유엔아동권리협약

- 전문: 유엔은 아동기에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창한 세계인권선언을 상기하고,
- 제3조: 당사국은 아동 보호나 돌봄에 책임이 있는 기관, 사업 및 시설이 주무관청이 설정한 적절한 직원 수 및 숙련된 관리와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18조: 당사국은 아동 돌봄을 위한 기관, 시설 및 서비스 개발을 보장해야 한다.
- 제18조: 당사국은 부모가 모두 일하는 상황에서 아동이 아동돌봄시설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아동복지와 아동돌봄

- 아동복지법 제3조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 아동돌봄은 아동의 발달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돌봄 형태의 양육과 관리
- 아동돌봄은 집단형태의 생활단위나 시설에서 아동의 신체적 보호, 치료적 보호, 생활습관 관리와 교육, 응급조치, 시설의 관리 등을 포함하는 활동

## 1 지역아동센터

- 목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2022년 기준: 4,253개소, 이용아동 수 105,210명

## 주요 연혁

-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
- 2006년: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운영
- 2007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실시 및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설치.운영
- 2008년: 지역아동센터 시범평가 실시
-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진행 및 컨설팅사업 실시
- 2010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
- 2012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 설치기준 강화

## 보건복지부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내역: 아동보호(안전한 보호와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 보건복지부

###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 2022년 12월 말 기준 신고·운영 중인 전국 지역아동센터: 총 4,163개소
- 운영주체: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가 2,286개소(53.7%), 법인 1,654개소(38.9%), 일반단체 195개소(4.6%), 지자체 118개소(2.8%)
- 이용 아동 수: 105,210명
- 초등학교 저학년 38,133명, 초등학교 고학년 43,846명, 중학생 17,495명, 고등학생 3,680명, 학교밖 84명

## 지역아동센터

- 기본 프로그램: 생활.안전의 보호 영역, 학습.특기 적성.성장과 권리의 교육 영역, 체험활동.참여활동의 문화 영역, 상담.가족 지원의 정서지원 영역, 홍보.연계의 지역사회 연계 영역
- 특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

→ 방과후 돌봄 + 석식 제공



## 보건복지부

###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 2022년 12월 말 기준 신고·운영 중인 전국 지역아동센터: 총 4,163개소
- 운영주체: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가 2,286개소(53.7%), 법인 1,654개소(38.9%), 일반단체 195개소(4.6%), 지자체 118개소(2.8%)
  
- 이용 아동 수: 105,210명
- 초등학교 저학년 38,133명, 초등학교 고학년 43,846명, 중학생 17,495명, 고등학생 3,680명, 학교밖 84명

## 지역아동센터

- 우선돌봄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의 아동;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역아동센터

- 이용아동 등록: 시설별 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 필수 운영 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학기중 14:00-20:00, 방학(단기방학 포함) 12:00-17:00
- 기본 프로그램: 생활.안전의 보호 영역, 학습.특기 적성.성장과 권리의 교육 영역,  
체험활동.참여활동의 문화 영역, 상담.가족 지원의 정서지원 영역. 홍보.연계의 지역사회연계 영역
- 특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 현황

- 2021년 12월말 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06,746명 중 다문화 아동이 21,386명으로 전체 아동의 20%이고 빠른 증가세를 보임
- 다문화 아동의 국적은 베트남 10,824명 50.6%, 필리핀 3,110명 14.5%, 중국(조선족 포함) 2,101명 9.8%
- 2022년 12월말 기준 지역아동센터 4,253개소: 개인 2,288개소 53.8%, 법인 1,731개소 40.7%, 단체 199개소 4.7%, 공립 35개소 0.8%
- 2022년 12월말 기준 이용 아동 수: 정원 121,631명(센터당 28.6명) 현원 109,044명(센터당 25.6명), 종사자 수 9,752명(센터당 2.3명)

## 2 다함께돌봄센터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마을돌봄 인프라로서, 2017년 7월 10개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 2018년 4월 관계 부처 합동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
-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적용 (2019.04.16 시행)
- 2024년 10월 1,190개 센터(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다함께돌봄센터

- 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2019년 4월 16일 시행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방화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이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주요 연혁

- 2017년: 다함께돌봄시범사업 10개소 실시(행안부.복지부 공동 공모사업)
- 2018년: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 정책 발표,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 설치.운영
- 2019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다함께돌봄센터 173개소  
설치.운영
- 2020년: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  
설치.운영

## 주요 연혁

- 2021년: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다함께돌봄센터 694개소 설치.운영
- 2022년: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 정책 발표, 다함께돌봄센터 829개소 설치.운영
- 2023년: 운영시간 연장(20시까지) 돌봄공백 방지,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운영 3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설치.운영
- 2023년 12월말 기준: 1,048개소, 이용아동 수 25,637명

## 추진방향

- 다함께돌봄은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
- 지역의 초등돌봄을 위한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 운영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정기.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급.간식 지원, 자녀돌봄 관련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다함께돌봄센터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돌봄 서비스 유형
  - 정기돌봄: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
  - 일시돌봄: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 사유에 의한 비정기적 돌봄

## 다함께돌봄센터

- 운영시간 :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 초등학교 학기.방학 중에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 돌봄 프로그램: 기본 서비스(출력 관리, 아동의 보호, 급.간식 제공 등), 공통 프로그램(놀이와  
휴식, 신체 활동, 숙제지도 및 일상생활교육), 특별활동 프로그램(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활동 및 체험 등)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아동권리보장: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천명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
- 돌봄서비스 신청: 보호자, 센터, 해당 지자체
- 이용아동관리: 기본서비스(출결확인, 급간식 지원), 공통프로그램(놀이.휴식, 신체활동, 숙제.독서지도, 아동지원), 특별활동프로그램(언어활동, 예체능, 과학, 체험활동)
- 종사자관리: 센터장, 돌봄선생님
- 시설운영관리: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급식.위생.차량안전 관리

### 3 마을돌봄 사업의 변화와 성과

-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12월 말 895개소에서 출발하여 2023년 10월 기준 4,265개소, 이용 아동 수는 109,640명
- 다함께돌봄센터는 2018년 17개소에서 출발하여 2023년 9월 기준 961개소, 이용 아동 수는 23,377명

## 마을돌봄 사업의 변화와 성과

- 1) 마을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은 지역사회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돌봄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2) 마을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은 오랜 기간 운영해 온 노하우를 잘 살려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돌봄기관(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과의 적절한 역할 정립이 필요함



## 마을돌봄 사업의 변화와 성과

- 3) 지역사회에서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마을돌봄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통합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1차적으로 아동 돌봄과 정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2차적으로 아동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학습, 문화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4) 마을돌봄기관은 돌봄과 정서적 지원을 하고, 학습과 체험 활동을 포함하면서 지역사회 연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방과후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마을돌봄기관의 과제 : 전문화

- 대상의 차별화: 경계선 지능, 다문화, 특수욕구, ADHD, 학교부적응 아동 등
- 프로그램의 전문화: 상담, 특수교육, 정서심리, 사회성 강화, 놀이치료 등
- 시간대의 확대: 야간 시간 확대
- 서비스 맞춤형: 교육, 취미, 여가, 특기, 급식 이외에 수면, 놀이, 양호(건강), 상담 관련 서비스 강화

## 마을돌봄기관의 과제 : 맞춤형 돌봄

- 센터 이용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다양성(연령, 다문화, 장애 등의 특성, 경제적 수준 등), 센터 이용 보호자 상황의 다양성(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장애, 심리정서 상태 등), 센터 역할에의 기대의 다양성(사회성, 보호, 심리정서, 놀이, 학습 등), 센터가 위치한 지역상황 등이 고려되고, 아동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야 함

## 마을돌봄기관의 과제 : 심리정서 지원

### 1) 심리정서 지원

- 보호자를 통한 심리적.정서적 지지나 자원이 부족한 아동에게 보호자 역할과 기능을 수행
- 개별성, 맞춤형 돌봄 내용의 핵심 분야는 심리.정서 지원

### 2) 다양한 연령대와 특성별 지원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 마을돌봄기관의 과제 : 지역 연계 활성화

- 심리정서 서비스 연계 강화: 학교/WEE센터(정신건강 발달검사, 자원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드림스타트-병.의원-바우처(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연계 강화
- 문제 발굴을 위한 학교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정보 연계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바우처 우선 이용 지원
- 병.의원, 심리상담센터 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 청소년 문제 예방과 정서적 지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마을돌봄기관은 청소년 문제 예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특화 활동을 전개
- 청소년의 심리, 정서, 행동의 변화를 꾀하고, 청소년의 바람직한 발달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문적인 조력활동을 전개
-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응, 의사결정, 문제해결, 성장을 돕는 활동을 전개

## 위기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 ‘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아동과 그 가족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돕는 통합적 실천방법
- 이를 위해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아동과 함께 강점관점의 체계적인 사정을 하고, 아동의 내적 자원 및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 마을돌봄기관 종사자들은 아동의 문제를 확인하고 욕구사정, 계획수립, 자원개발 등을 하고, 상황에 따라 옹호자, 중재자, 중개자, 자원 연계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

**감사합니다.**